

---

---

# 고양 상공회의소

## 여성CEO기업인 모임 교육자료

제목 : 가업상속 세제 지원제도

일시 : 2015. 03. 10

강사 : 이태원 대표세무사

(태원세무법인 대표이사)

---

---

# I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

1. 취지: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

## 2. 과세특례요건

### 1) 수증자와 증여자의 범위

#### (1) 증여자 요건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의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연한 60세 이상의 부모

#### (2) 수증자 요건

18세 이상인 거주자 1인

### 2) 증여재산의 범위

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(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)

### 3) 가업의 승계

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, 증여일로부터 5년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.

#### ※가업의 범위

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가업으로서, 증여일 직전과세연도말 현재 중소기업(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도소매업, 등 30개 업종) 기업에 해당할 것

## 3. 과세방법

$$\text{증여세 산출세액} = (\text{증여세과세가액} - 5\text{억원}) \times 10\% \text{ (또는 } 20\%)$$

## 4. 사후관리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
①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②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 정상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
③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
## 5. 증여자의 사망 시 증여재산의 정산

### 1) 가업승계 주식 등의 상속재산 가산

가업승계 지분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

### 2) 증여세액공제의 한도 적용 배제

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에도 불구하고,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.

### 3)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

가업승계 주식 등은 사전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연부연납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

## II 가 업 상 속 공 제

### 1. 취지

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전수·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함이다.

### 2. 가업상속공제의 요건

#### 1) 가업상속의 범위

- 중소기업 기업으로서,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
-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%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

#### 2) 피상속인 요건

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

- ① 50% 이상의 기간
- ② 10년 이상의 기간
-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
#### 3) 상속인 요건

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
-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
-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
-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나 경우

### 3. 가업상속공제액

#### 1)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

※가업상속공제액 = MIN (①,②)

① 가업상속재산가액

② 한도 :

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: 200억원

㉡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: 300억원

㉢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: 500억원

#### 2) 가업상속재산의 범위

①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기업 :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

②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기업 :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

### 4. 사후관리 (가업상속공제가 추정되는 경우)

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,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추징율(70~100%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

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% (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%) 이상을 처분한 경우

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

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수의 평균 (기준고용인원)의 80%에 미달하는 경우

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% 에 미달하는 경우

※ 기간별추징율 표

기간	7년 미만	7년 이상 8년 미만	8년 이상 9년 미만	9년 이상 10년 미만
율	100%	90%	80%	70%